## 우리 나라 근대시기 《국민참정권》사상

오 혁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부르죠아사상의 발생문제를 해명하는데서도 주체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제5권 445폐지)

19세기 중엽에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근대력사를 개척 하기 시작하였다.

일찌기 고대로부터 동방일각에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여온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근대시기에도 심오한 사색과 창조적노력으로 가치있는 철학사상유산들 특히 사회정치사상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속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사상은 우리 나라 근대정치사 상발전의 높이를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일정하게 철학사적가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정치사상에서 《국민참정권》사상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백성들이 정치에 참가하여 정부를 감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것이 그들의 권리이며 의무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국민참정권》사상은 근대시기 새롭게 제기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본 《주권재민》사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견해로서 《주권재민》사상과 《국민참정권》 사상은 하나로 결합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 근대정치사상사에서 《국민참정권》사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론의하고 실현하려고 한것은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이였다.

물론 선행시기 개화사상가들속에서도 《국민참정권》에 관한 론의가 없은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부르죠아개혁을 왕과 상충관료들의 계몽을 통해 실현하려고 한데로부 터 《국민참정권》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론의하지 않았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은 개화사상가들과는 달리 광범한 대중을 부르죠아개혁운 동에 참가시킬것을 지향하면서 《국민참정권》에 대하여 여러가지 견해들을 제기하였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은 무엇보다먼저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이기때문에 정부가 애민하는 정부인지 아닌지 감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만일 정부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부일 때에는 그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과 명령을 조금도 어김없이 시행하는것이 백성들의 의무이지만 만일 정부가 백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를 교체하는것이 백성들의 직무에 속한다고 하였다.(《독립신문》 1898년 1월 11일 론설)

당시 《독립신문》에서는 지방행정의 부패현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설령 원이 원노릇을 잘못하는것이 그 책망이 원에게만 있을뿐아니라 백성에게 더 있는것이라. 만일 그 백성들이 모두 합심하여 그 원이 원노릇을 잘하지 아니하면 당초에 원노릇을 못하게 백성들이

말하였다면 그 원이 감히 백성을 무리하게 토색한다던지, 송사를 법률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처리한다던지 감히 못할지라, 그러한즉 원이 원노릇을 잘못하는것이 다름이 아니라 실상인즉 백성이 잘못하게 하는 까닭에 잘못하는줄로 우리는 생각하노라.》(《독립신문》1897년 4월 17일 론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이 정부가 백성들의 잘못을 살피고 백성들도 정부의 잘못을 살필 때 국가의 정치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것을 막을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민참정권》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은 다음으로 백성들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되는가를 감독할 뿐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는것을 비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이 나라의 정치를 감시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주저함이 없이 정부를 비판하고 그것을 여론화하여야 하며 정부는 백성들이 아무런 장애없이 나라의 정치를 시비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독립신문》1898년 9월 7일 론설) 그들은 《정부에서 백성이 불평하는것을 싫어하면서 언권을 마구 쓰는 폐단이 있다 하여 공론의 대도를 막는것은 밥먹다가 체하는것을 두려워하여 밥먹기를 그만두는것과 같다.》(《독립신문》1898년 11월 7일 론설)라고 강조하였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은 《국민참정권》에 관한 사상을 내놓았을뿐아니라 그것을 실 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지방관리들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할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은 《외국에서는 관찰사와 원 같은 관리들과 정부속에 있는 관원들을 백성을 시켜 뽑게 하니 설사 그 관원들이 잘못하더라도 백성들이 남군을 원망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를 꾸짖고 그런 사람은 다시 투표하여 미관말직도 시키지아니하니 벌을 정부에서 주기 전에 백성이 그 사람을 망신을 시키니, 그 관원이 정부에서 벌주는것보다 더 두렵게 여길터이요, 또 청하여 빠질 도리도 없을터이라, …그를 백성으로 시켜 인망있는 사람들을 투표하여 그중에 표 많이 받은이를 뽑아 관찰사와 군수들을 시키면백성이 정부를 원망함이 없을것이요, 또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한사람이나 두사람의 천거로 시킨 사람보다 일을 낫게 할터이요, 그 사람이 그 도나 그 군에 산 사람인즉 그곳 일을 서울에서 (임명되여)가는 사람보다 자세히 알더이요, 그곳 백성들이 달게 원이든지 관찰사를 시켰으니 그 사람이 그 백성들을 위한 생각이 더 있으리라.》(《독립신문》 1896년 4월 14일 론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백성들의 선거에 의한 지방관선출이 정부운영에서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반영되여있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속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사상은 당시 높아진 인민들의 정 치적요구를 반영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일찌기 1894년 갑오농민전쟁시기 농민들을 포함한 피압박근로대중은 전주화의이후 전라도의 53개 고을의 치안과 질서유지를 위한 농민들의 자치조직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농민군은 봉건정부의 그릇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폐정개혁안》을 제기하고 반봉건적이고 반침략적인 요구가 반영된 여러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탐관오리들과 반동적인 유림량반, 횡포한 지주토호들에 대한 엄격한 징벌, 천인들의 대우개선과 노비들의 사회적해방실시, 봉건적인 지벌의 타파와 녀성의 재혼의 자 유보장, 피압박근로대중의 정치참가와 신분적불평등의 반대, 사회적평등과 자유의 보장 등 정치적인 문제들과 무명의 잡세와 국가와 개인에게 진 일체 빚의 무시, 토지의 평균분작 등경제적인 문제들, 왜적과 간통하는자들에 대한 엄격한 징벌과 외국상인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 등 외래자본주의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리고 당시 간도나 연해주로 흘러간 류랑민들속에서도 이미 백성들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그들의 대표가 선출되고 자치가 시행되고있었다.

이에 대하여 《독립신문》은 1898년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거기 있는 조선사람들은 관원을 백성들이 투표하여 뽑아 그중에 지식이 있으며 정직하고 물망있는 사람으로 중임을 맡기는 까닭에 거기 관인들은 백성에게 돈 한푼이라도 무리하게 취할수가 없고 청도 없고 소록질도 없으며 원이 백성섬기기를 상전같이 하고 백성이 원섬기기를 아이와 같이 하여 관민이 만사를 상의함으로써 백성에게 편하고 지방행정이 잘되여간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조선에서도 백성들을 시켜 자기 원들을 고을안에서 그중 물망있는 사람으로 뽑아 몇해씩 작정하고 원을 시켜가지고 지내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말라고 하여도 그중에 정직한 사람을 뽑아 자기 원들을 삼을터이요, 만일 그 원이 백성에 대하여 무리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백성들이 다시 그 사람을 원으로 뽑을리도 없고 고을안에 천한 사람이 될터이니 그른 일을 할 사람이 적을터이라.》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높아진 정치적요구와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의 사상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으며 결과 인민대중의 정치참가에 대하여 제기하면서 그들이 지방관리들을 선거하는 제도를 실시할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게 하였던것이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속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사상은 우리 나라 정치사상발 전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한마디로 《목민》에 대하여 력설하며 광범한 백성들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던 봉건정치제도를 타파하기 위한 반봉건투쟁에로 사람들을 불려일으켰다는데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정치에 참가할수 있는 권한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다. 중세봉건통치배들과 그 사상적대변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을 한갖 정치의 대상으로만 보았으며 정사는 오직 《사》즉 량반통치배들의 독점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에 불만을 가지거나 그에 반기를 드는데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였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에서 배제되여 정치의 대상으로 인정되여오던 중세시기 와는 달리 근대시기에 들어와 백성들에게도 정치에 참가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 다는 주장이 나온것은 인민대중의 높아진 자주적요구와 뗴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그것 이 당시 봉건통치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사람들을 적극 추동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 요도 없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속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사상은 이와 같은 진보적인 측면을 가지고있는 반면에 적지 않은 제한성도 내포하고있다.

사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이 말한 《국민참정권》에서 《국민》이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라 바로 부르죠아지를 의미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속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사상에서는 《교육받지 못하고 계몽되지 못한》 인민대중에 대한 배타의식이 진하게 표현되고있다.

백성들이 정치에 참가하는것을 허용하지 않는 배타의식은 일찌기《한성순보》에서 표현되고있다.《한성순보》에서는 《국민참정권》을 주장하는 립헌정치제도의 우점에 대하여 강조하면서도 지혜가 없는 백성들의 정치참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 리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예로부터 재상들이 흔히 적임자가 아니여서 정치가 거행되지 못하고 민이 편안치 못했던것은 혹은 문벌 혹은 당파로 관리를 등용하고 일찌기 군자를 널리 뽑아서 정치를 맡기지 않았기때문이다. 지금 이 립헌정치는 백성의 선거를 근본으로 삼아 일체 그 뜻을 따르기때문에 국중의 현명하고 능한자는 누구나 그 의원이 될수 있고 또한 누구나 나아가 재상에 이를수 있으니 어찌 소인이 임금을 불의에 빠뜨리는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 또한 립헌정치의 제일가는 리익이다. 그러나 백성이 지혜가 없으면 함께 의논할수 없는것은 당연하다. 백성들이 지혜가 많아서 국가의 치란과 득실의 연유를 안 다음에야 이런 일을 거행할수 있다.》(《한성순보》 제10호 1884년 1월 30일 각국근사)

개화사상가들속에서 제기된 이러한 견해는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의 《국민참정권》 사상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은 백성들이 아직 무식하다는 리유를 들어 선거를 통한 백성들의 정치참가를 원이나 관찰사를 선출하는 지방자치에만 국한시키자고 주장하였다.(《독립신문》1896년 4월 11일 론설) 그리고 백성들의 정치참가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의병을 일으키는것과 같은 왕의 명령이나 법을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기들의 정치적요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백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극력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만일 정부에서 무리한 법률을 만들던지 인민을 사랑치 않는 관인이 있으면 그것을 세계에 리치를 좇아 설명하면 정부에서도 순한 인민의 말을 더욱 두렵게 여길터이니 편하고 순한 길을 버리고 난을 일으킨다든지 정부를 협박하여 하는것은 아니되고 자기의 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행실이라.》(《독립신문》1896년 4월 11일 론설)라고 하면서 의병투쟁이 나라에 화를 가져오고 백성들을 해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의 견해에서 찾아보게 되는 이러한 제한성은 그후 애국문 화계몽운동가들속에서도 본질상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나타났다.

《국민참정권》에 대하여 주장하면서도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참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근거를 내들며 제한하려고 한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의 견해는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실현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부르죠아계층의 정치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의 애국적지식인들속에서 제기된 《국민참정권》사상은 봉 건통치제도를 타파하고 나라의 정치제도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 요 구와 객관적으로 일치되는것으로 하여 당시 사회발전에 일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